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 주체 확대 및
인구밀도를 고려한 지원사업 우선 시행 근거 마련>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13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 주체 확대 ····· 3

2. 인구 고밀도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시행근거 신설 ····· 6

※ 참고자료 ····· 9

1. 발전 5개사 자체지원 규모 ····· 9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바, 해당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유연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사업 우선대상에서 제

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 주체 확대

개정안은 사업자지원사업의 주체를 현행 '원자력·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로 변경하여, 원자력·수력 이외의 발전사업자도 자체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3조의2(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및 복지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발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원자력과 수력 이외에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의 사회 공헌 노력이 요구되고, 원활한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원자력·수력 발전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갈등 해소 및 주민 수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 주체 확대 시 발전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 등 재정부담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1]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2]는 원전·수력의 사업자지원사업이외에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3] 출연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4](참고1), 이들은 최근 재무상황 악화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추가적인

1) 전기요금 총괄원가 = ①적정원가(매출원가+판매비±세전손익±영업외손익-송배전이용요금수입) + ②적정투자보수
2)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3)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설치되었음('17.1.17).
4) 발전5사 자체지원규모(억원): ('20) 520 → ('21) 413 → ('22) 498 → ('23) 445

지원소요는 전력공급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임.

한편, 2024년부터 주요 발전원인 화력발전사업자가「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2배 인상됨에 따라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전사들의 지원금 규모와 재무상황 추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인구 고밀도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시행근거 신설

개정안은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u>4.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u>

현행법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5],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장기계획이 수립된 지역 주민, 총시설용량이 100만kW 이상인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유연탄화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구 고밀도 지역에 대한 소득증대, 공공복지, 기업유치 등의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주변지역의 경기 활성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하고,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많아 경기부양 등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구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시행기준에 인구밀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지원사업이 집중될 수 있어 도

---

6)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시·농촌 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7], 인구밀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1

7) '23년 통계청 인구밀도에 따르면, 수도권 2,206천명/㎢, 충남 267천명/㎢, 강원도 91천명/㎢ 임.

[참고1]

발전 5개사 자체지원 규모(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지역협력비 등)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2,043	41,307	49,842	44,505
서부 발전	소 계	16,839	10,381	14,276	16,381
	상생협력기금 출연	2,500	850	3,150	900
	지역협력비 및 기부금 등	14,339	9,531	11,126	15,481
남부 발전	소 계	9,067	9,231	10,300	6,778
	상생협력기금 출연	2,500	2,500	1,500	900
	지역협력비 및 기부금 등	6,567	6,731	8,800	5,878
중부 발전	소 계	13,401	9,388	13,632	12,664
	상생협력기금 출연	2,500	2,500	1,500	800
	지역협력비 및 기부금 등	10,901	6,888	12,132	11,864
동서 발전	소 계	4,517	4,835	3,604	2,842
	상생협력기금 출연	2,500	2,500	1,500	1,000
	지역협력비 및 기부금 등	2,017	2,335	2,104	1,842
남동 발전	소 계	8,219	7,472	8,030	5,840
	상생협력기금 출연	2,500	2,500	1,500	1,000
	지역협력비 및 기부금 등	5,719	4,972	6,530	4,840

※지역협력비: 지역주민과 우호적 관계형성 및 전력산업 이해증진 제고 목적으로 지역 사회적기업 지원, 노인일자리창출, 마을대기측정, 지역행사 지원, 지역홍보 등에 지원되는 비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